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기 위한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979호, 2024. 1. 9. 공포)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장관의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면서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의 각호가 제2항의 각호로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조항 개정(안 제2조)

- 제2조제1항 중 “제4조제1항 제1호”를 “제4조제2항 제1호”로 변경
- 제2조제2항 중 “제4조제1항 제2호”를 “제4조제2항 제2호”로 변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2.19. ~ 3.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제4조제1항제1호”를 “제4조제2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4조제2항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개발구역의 지정 등) ①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4조제1항제1호</u>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”란 대지면적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.</p> <p>② <u>법 제4조제1항제2호</u>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”란 대지면적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개발구역의 지정 등) ① -- ----- ----- <u>제4조제2항제1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법 제4조제2항제2호</u>----- ----- -----.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942